

농림축산식품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발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, 진주시, 사천시, 김해시, 밀양시, 의령군, 함안군, 창녕군,
남해군, 산청군, 함양군, 거창군, 합천군

내 용

경상남도에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
률 제고를 위하여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림사업
시행지침」에 따라 발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지, 지급대상자, 신청자격, 지급요
건 등을 확인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
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 제5장의2, 제40조의4 제
2항 제2호에 따르면 “발농업 재배면적과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제3호에 따른 발농업 재배면적의 합이 1,000㎡ 미만인 자는 발농업 보조금 지급
대상자가 될 수 없다”고 규정되어 있으며,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
도 시행규칙」 제18조 제2호의 다, 라 항목은 “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에
서 제외하는 농지는 조건불리보조금과 경관보전보조금”으로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신청자인 농업인이 각 직불제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
으나, 이후 직불제 등록(신청)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계(국립농산물품질관
리원, 한국농어촌공사)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, 농지 이용여부 등이 충족되지
못하여 실제 재배농지 면적의 합이 1,000㎡ 미만으로 현장점검 결과가 전산시스

템으로 지자체에 전송되었으며, 그 결과를 지자체에서는 지급요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또한 직불업무 담당자는 지급 대상자 선정단계와 지급요건 확정단계, 자금 배정 및 집행단계시 직접지불금 수령필지의 직불제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직불금 중복지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경상남도 거창군, 사천시, 함양군 등 13개 시·군에서는 전송된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행 및 불일치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 직불제 사업대상자 지급 제외요건 중 농지면적(밭농업)의 합이 1,000㎡ 미만인 대상자와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과 조건불리보조금의 중복 지급,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과 경관보전보조금과의 중복 지급된 해당 농지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, [표] “밭농업직불금 부당지급 현황”과 같이 해당 필지의 직불금 신청자에게 2013~2015년까지 총 89호 농가, 7,881,180원의 밭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.

[표] 밭농업직불금 부당지급 현황(1,000㎡ 미만 및 직불금 중복지급)

시군명	직불금 지급내역(㎡, 원)			직불금 회수대상내역(㎡, 원)	
	수령자	지급면적	지급금액	회수대상면적	회수금액
합계	89	185,048	7,883,560	184,953	7,881,180
창원시	1	1,425	57,000	1,425	57,000
진주시	26	10,597	364,540	10,597	364,540
사천시	12	26,680	1,274,780	26,680	1,274,780
김해시	1	18,721	936,050	18,721	936,050
밀양시	1	2,205	71,640	2,205	71,640
의령군	15	13,313	341,630	13,313	341,630
함안군	1	1,180	23,700	1,180	23,700
창녕군	5	13,566	373,960	13,566	373,960
남해군	2	5,386	269,400	5,386	269,400
산청군	2	1,262	50,480	1,262	50,480
함양군	15	37,903	1,500,160	37,903	1,500,160
거창군	6	51,464	2,563,070	51,464	2,563,070
합천군	2	1,346	57,150	1,346	57,150

조치할 사항 창원시장, 진주시장, 사천시장, 김해시장, 밀양시장, 의령군수, 함안군수, 창녕군수, 남해군수, 산청군수, 함양군수, 거창군수, 합천군수는
밭농업 농지면적의 합이 1,000㎡ 미만, 조건불리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을 중복
수령한 농업인에게 지급된 밭농업직불금 7,881,180원을 회수 하는 등 적절한 조
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